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유도 및 재원 확보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유료화하고,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국금지 요청 지방자치단체 확대(안 제2조)

-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“규제권한 지방이양”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·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명을 초과하는 4개 특례시(고양·수원·용인·창원)까지 확대

나.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의 유료화(안 제48조제4항 및 제5항)

-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 유료화를 통해 교육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을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한편,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 환경과 품질을 개선

다.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중 허용 제외업종 추가 (안 별표1의2)

- 단순 노무를 허용업종으로 하는 H-2(방문취업)의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 ‘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’, ‘국제 및 외국기관’ 업종의 공공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 제외업종으로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강화 1건(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중
허용 제외업종)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단서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시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및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23조제2항제2호 중 “라목·바목 또는 사목”을 “라목 또는 바목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전단 중 “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”을 “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”를 “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방문하는 전날까지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 전단 중 “변경신고서를”을 “변경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”로 한다.

제48조제4항 중 “개발”을 “개발,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.

제88조의6제1항 중 “(외국인등록을 한”을 “(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제29호(서)를 어)로 하고, 같은 란에 서) 및 저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서)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(84)

저) 국제 및 외국기관(99)

별표 1의3의 12.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란 제12호 중 “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. 거주(F-2)란의 사목 1)부터 3)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”을 “사람으로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출국금지 절차) ① (생 략)	제2조(출국금지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,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가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장</u> <u>· 광역시장 · 특례시장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입국심사) ①·② (생 략)	제15조(입국심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.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④ ~ ⑩ (생략)

제23조(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1. (생략)

2.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의 라목·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

③ -----

-----.

-----. 다만,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및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.

④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 라목 또는 바목-----

속하고 있는 사람

3. (생략)

③ ~ ⑧ (생략)

제33조(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
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) ①
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
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
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
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
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
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
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
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체류기간 연장 등
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
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
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
밝혀야 한다. 다만, 법무부장관
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
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,
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
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
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
수 있다.

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
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) ①

---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
통지서 등을 -----.

-----.

② ----- 체류자격 부여 불허
결정 통지서 등-----

-----.

-----.

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48조(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) ① ~ ③ (생략)

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, 법인, 기관,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.

<신설>

⑤ (생략)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제88조의6(난민여행증명서의 발

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개발, 운영 -----

-----.

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⑦ ----- 제6항 -----

-----.

제88조의6(난민여행증명서의 발

급)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, 외국인등록증(<u>외국인등록을 한</u> 경우에만 해당한다)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(<u>외국인등록</u> <u>증을 발급받은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외국인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116